



건물관리업 사망사고 예방

사고사례 및 예방대책



최근 서울지역 건물관리업 종사자 사고사망 12건 발생!

* 주요 사망사고 사례



- '20년 11월
빌딩 내 지상 1층에 정지한 **자동차용 엘리베이터** 운반구 상부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하던 중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하강하면서 **추락**하여 사망
- '20년 12월
빌딩 지상 1층에서 운반구가 없는 **엘리베이터** 문을 비상키로 수동으로 여는 과정에서 **추락**하여 사망



- '20년 8월
오피스텔 건물 지하에서 **집수정** 내부로 들어간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,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관리소장이 들어갔다가 3명 모두 **질식** 사망
- '20년 8월
공장동 **정화조** 청소작업을 위해 들어간 작업자 1명이 산소결핍으로 쓰러지자, 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를 위해 내부에 들어간 뒤 쓰러져 1명 **질식** 사망, 1명 부상



- '20년 7월
아파트 관리소 시설 담당 근로자가 **사다리**를 이용해 소방유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**추락**하여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
- '20년 10월
빌딩 내 시설업무 담당 근로자가 알루미늄 **사다리**에서 천장 내부 전선 정리 작업을 실시하던 중 **추락**하여 사망



- '21년 1월
아파트 경비원(70대)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위해 침구류를 옮기던 중 **지하계단**에서 **넘어져** 부상, 치료 중 사망
- '21년 2월
빌딩 경비원(70대)이 야간 순찰을 돌며 **계단**을 내려오던 중 **넘어져** 부상, 치료 중 사망

작업전 안전점검! 산업재해예방의 첫걸음입니다.



* 사고발생 원인·대책



기계식 주차설비 & 엘리베이터



원인

- 1 출입금지 구역 미지정, 설비 가동 중 내부 출입
- 2 설비 내부 작업 중 가동스위치 임의 조작

대책



전원 차단 확인



사용금지 표지 부착



개인보호구 착용

- 1 점검 시 설비의 전원 차단 확인
- 2 다른 근로자가 조작하지 못하도록 「사용금지」 표지 부착
- 3 추락위험 장소에서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) 착용



밀폐공간 작업



원인

- 1 작업 현장 환기 미실시
- 2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

대책



환기팬으로 환기



농도 측정



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

- 1 작업 전·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실시
- 2 작업(재출입 포함)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
- 3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



이동식 사다리



원인

- 1 작업 상황에 맞지 않는 사다리 사용
- 2 경사진 바닥에 사다리를 기울어진 상태로 설치·사용

대책



최상부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금지



2인 1조 작업



개인보호구 착용

- 1 A형 사다리 최상부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 금지
- 2 사다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 실시
- 3 추락위험 장소에서 개인보호구(안전모, 안전대) 착용



이동통로 (계단 등)



원인

- 1 뒷걸음으로 내려오면서 청소하는 등 불안정한 방법으로 작업 중 넘어짐
- 2 야간 작업 중 조도 확보 미흡으로 넘어짐

대책



미끄럼방지조치



헛디딤 사고요인 개선



75럭스 이상 조도유지

- 1 계단 끝부분 미끄럼방지조치 실시
- 2 계단 헛디딤 사고요인 작업 방법 개선
- 3 75럭스(LUX) 이상 조도 유지

☑ 건물관리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

| 점검사항 | 점검내용 | 점검 결과(O,X)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|-----|
| | | 적정 | 미흡 | 비대상 |
| 공통사항 보호구 | 개인보호구(안전화, 안전모, 안전대 등) 지급·착용 * 밀폐공간 작업 시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| | | |
| 기계식 주차설비 | 주차설비 내부 출입 시 전원차단 확인 | | | |
| | 주차설비 수리·점검 시 기동스위치에 「사용금지」 표지 부착 확인 | | | |
| | 수리 작업자 외 차량리프트 임의 탑승 금지 조치 | | | |
| | 비상정지장치 등의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확인 | | | |
| 고소작업 |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▲ 2인1조 작업 ▲ A형 사다리 최상부 작업발판 용도 사용 금지 | | | |
| | 일자형 사다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, 작업발판 용도 사용 금지 | | | |
| | 고소작업대, 말비계, 작업발판, 달비계 등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| | | |
| | 달비계 연결부 마모, 파손 및 작업로프 체결상태 확인 | | | |
|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| 잠금장치 관리 및 담당자 지정 | | | |
| |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구역 지정 | | | |
| |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여부 확인 | | | |
| 밀폐공간 | 밀폐공간 확인 및 무단 출입금지 조치 | | | |
| | 작업 전·작업 중 환기팬으로 환기 실시 | | | |
| | 작업(재출입 포함)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| | | |
| 이동통로 (계단 등) | 계단 끝단 미끄럼방지 조치, 바닥 물기 등 제거 | | | |
| | 이동통로 적정 조도 확보 및 정리정돈 실시 여부 확인 | | | |

※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